



공동주택관리 분쟁!

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십니까?

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
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
공정·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.



중앙 공동주택관리
분쟁조정위원회

<http://namc.molit.go.kr>
031-738-3300

- ① 윈윈(win-win) 해결방식으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.
- ② 빠른 시일(30일)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.
- ③ 최소의 비용(1만원)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④ 변호사, 회계사, 건축사 등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
- ⑤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,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.

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



국토교통부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여러분의 참여가
공동주택 문화를
바꿉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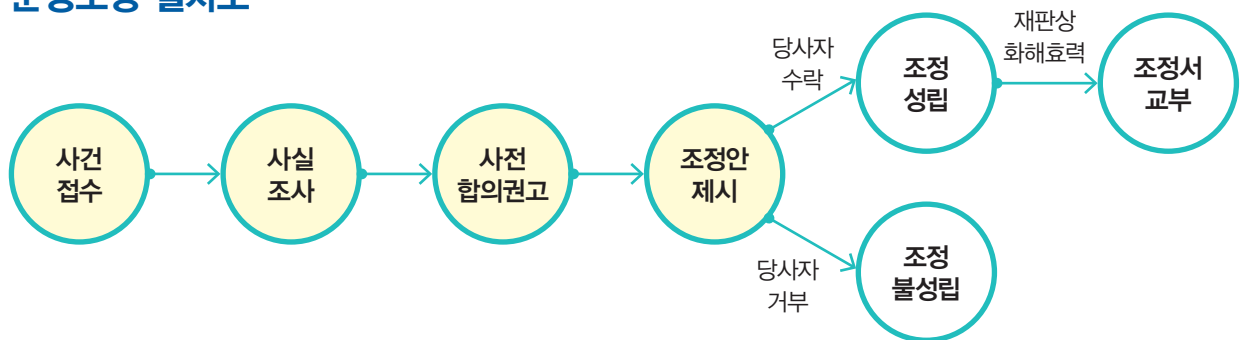
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은?

-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, 동대표 자격 등에 관한 사항
- 관리비·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·사용 등에 관한 사항
- 공용부분 유지·보수·개량, 리모델링, 층간소음, 혼합주택단지 분쟁
(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)

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

-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
- 당해 시·군·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
-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

■ 분쟁조정 절차도



■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

- 구비서류 : 분쟁조정신청서, 교섭경위서,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, 신분증, 수수료 1만원(수입인지 구매 납부)
 - *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
 - *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,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
- 방문 및 우편접수처
(13637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(구미동 175) 6층
- 전화 _ **031-738-3300** 홈페이지 _ <http://namc.molit.go.kr>